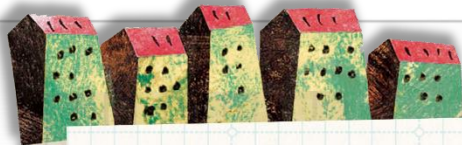


노인인권 길라잡이

문수효마을 사회복지사 배성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이념

인간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목적입니다.

존엄성은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들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의 정초 원리
존엄성의 관념은 인간간의 위계를 부정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듦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법규에 나타난 인권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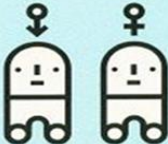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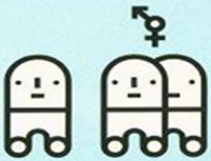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차별 사유 19가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항)

 성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The Types of Discrimination 차 별			 민족	 외모 등 신체조건
 결혼유무	 임신, 출산	 학력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정치, 사상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질병)		

지향적 명제

계몽주의 시기에 인권을 선언하면서 썼던 표현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권은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다



1부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

1. 노인 인구의 현황과 전망
2. 노인 인권이란?
3.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
4. 노인 인권의 법제도 및 기관들
5. 노인 인권의 실천과제



老人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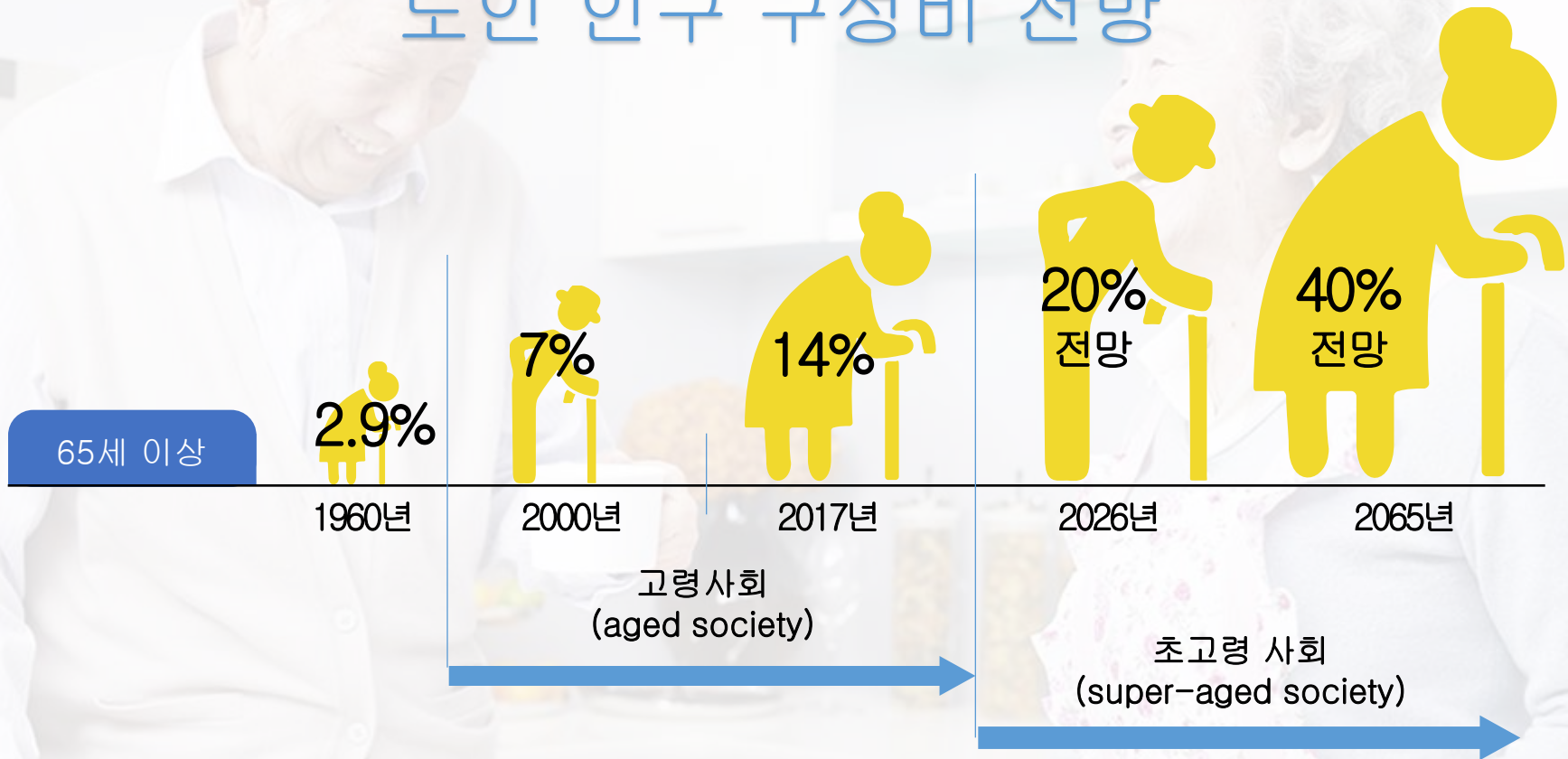


노인은?

인간의 노화(aging)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국제노년학회, 1951)

노인 인구 구성비 전망



65세 이상

2.9%

1960년

7%

2000년

14%

2017년

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전망

2026년

40%
전망

2065년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

85세 이상
(초고령층)

2015년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 → 2065년 11.7%로 증가(예상)

노인 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나라 노인 인권을 위한 노력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존능력의
존중과 활용, 노인의 가치와 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

노인의 권리영역 : 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인인권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

한국노인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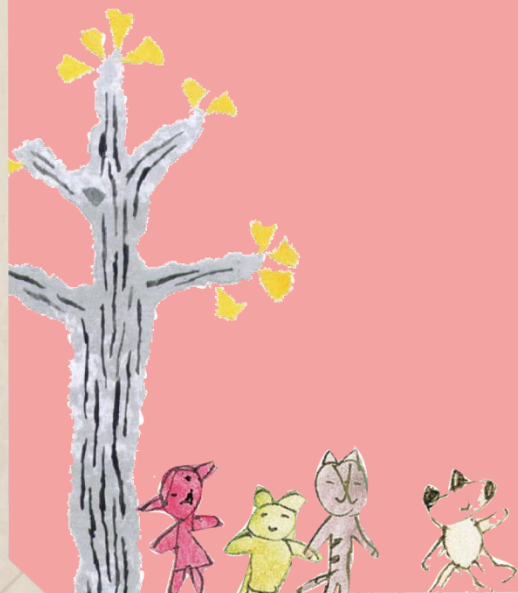
<http://cafe.daum.net/elderrights>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http://www.kaswcs.or.kr/>

2부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



老人權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노인 학대



노인이 학대 받고 있다고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어쩌다 한 번 이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란 생각에
모른 척 하진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처를 봤을 때 노인학대가
의심됐지만, 같이 온 부양자의
행동이 너무 자상해
혼란스러웠다



학대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노인이 잘못된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학대 사건을 보았지만
신고를 하기엔 정황들이
충분치 않아 보였다



학대인지, 그냥
어르신이 사는 방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내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치매가 의심스러워 보여
어르신을 믿어야 할지
확실치 않았다

학대 발생 장소에 따른 분류

- 배우자
- 성인자녀
- 고용인
- 보호자

가정학대



- 양로원
- 요양원
- 노인복지시설
- 시설관련종사자

시설학대



- 경로당
- 공원
- 공공장소 등

기타학대



학대 유형에 따른 분류

유 기

방 입

[자기방입]

경제적 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노인학대 I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발로 차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위협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제한된 공간에 억압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 • 어려운 노동을 강제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노인 부양의 부담을 노골적으로 표현 • 가족모임이나 의사결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킴 • 노인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무시 • 모욕적인 언어

- 노인학대 상담 매뉴얼(보건복지부, 2010)

노인학대 II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 없이 소득, 재산 및 임금을 임의 사용 및 재산 권에 대한 법적 권리 침해 •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 귀중한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파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동의 없는 성적인 접촉(입맞춤, 애무 등) 또는 성관 계등을 강요 • 성적부위를 드러낸 상태로 위생용품(기저귀 등)이나 속옷을 교체하여 수치심 유발 또는 신체를 빚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노인학대상담매뉴얼(보건복지부, 2010)

노인학대 III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스스로 식사, 목욕, 배변처리, 청결유지 등이 힘든 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음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공과금, 사회활동을 위한 비용 등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음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인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간병이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방치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등)를 제공하지 않음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장기간 노인과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거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등 유기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자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 노인학대 상담 매뉴얼(보건복지부, 2010)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처벌에 관한 내용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폭행, 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업무를 수행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노인학대법적처벌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징역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시행일 2016. 12. 30.)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
('16.1.25.시행)되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노인복지법이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 확대



동법 제39조의12 법에 명시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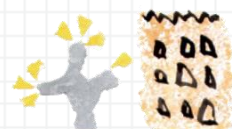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며, 24시간 신고접수 가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
-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



여러분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인권은?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된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